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24-17
----------	---------

제출연월일: 2024년 2월 일

제출자: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나. 예산조치: 따로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4. 1. 15. ~ 2024. 2. 5.) 결과: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3) 규제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일부수용

-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성별, 연령, 장애유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 내용이므로,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방침 수립 시 이러한 제반여건 등을 적극 반영 및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자문) 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의 전제
-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 결과, 강서구 최종 선정(국비 30,000천원)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비 등
- 비용추계의 결과
-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에 따른 소요경비는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출	국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구비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0

4. 작성자: 행정관리국 교육지원과장 김영선

(담당자: 평생교육팀 행정7급 권도은 / ☎2600-698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평가번호	2024-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6급	성명	최윤선
입안주무부서	교육지원과	조치일		2024. 1. 2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조례 제정안 전부		- 부패유발 요인 없음		- 원안동의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4A서울강서001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교육지원과	
	담당자명	권도은	전화번호 02-2600-698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4년 1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교육지원과)	<p>'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안'은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p>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의견		
	<p>○ 조례안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 구민의 성별, 연령, 장애여부·유형, 직업군 등 제반여건을 적극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함.</p> <p>- 2023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한국교육개발원, 2023)* 보고서를 살펴보면, 성별, 학력, 연령 등에서 평생학습 참여 현황(직업 목적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수강시간 등)의 격차가 발생함.</p> <p>또한, 2022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교육부, 2022)*에서 장애 유형에 따른 성별 평생교육 참여 정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음. 이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시민의 다양한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정책 추진의 기반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p>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④(생략)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② (생략)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 <u>이 때 구민의 성별, 연령, 장애여부·유형, 직업군 등 제반여건 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u> ④(생략)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4년 2월 5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4년 01월 2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안소현/02-2600-6762)				
교육지원과장 귀하				

□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 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한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 ④ 생략

제20조(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교육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전문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 대상인 장애인의 입학과 수학(修學) 등에 편리하도록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맞추어 시설을 정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